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7129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71298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6413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목민

담당변호사 배은서

피고, 항소인 A

변론종결 2022. 4. 14.

판결선고 2022. 4. 28.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5. 12. 선고 2019가단6413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1. 24. 접수 제2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연수, 판사 류창성, 판사 정희일

별지

목 록

1. 정읍시 G 답 5,264㎡ 중,

가.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46, 40, 41, 42, 43, 44, 4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7㎡

나. 별지 도면 1 표시 7, 8, 9, 10, 11, 12, 64, 50, 49, 48, 4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676㎡

다. 별지 도면 1 표시 60, 61, 49, 50, 51, 52, 53, 63, 62, 58, 59,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74㎡

라. 별지 도면 1 표시 58, 62, 63, 53, 54, 55, 56, 57, 5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198㎡

마. 별지 도면 1 표시 50, 64, 12, 13, 14, 15, 16, 17, 69, 68, 67, 66, 53, 52, 51,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936㎡

바. 별지 도면 1 표시 31, 32, 65, 66, 67, 68, 69,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1,388㎡

2. 정읍시 K 전 665㎡ 중,

가. 별지 도면 2 표시 70, 71, 72, 73, 74, 75, 76, 77, 78, 82, 83, 7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582㎡

나. 별지 도면 2 표시 82, 78, 79, 80, 81, 8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 부

분 83㎡

3. 정읍시 M 전 298㎡ 중 1/3 지분(과거 B 지분) 및 정읍시 N 전 601㎡ 중 1/3(과거 B 지분). 끝.

